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3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박준태 · 고동진

조지연 · 유용원 · 이인선

박덕흠 · 배준영 · 구자근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,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제10조의2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군인”을 “군인 또는 군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군인”을 각각 “군인 또는 군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군인”을 각각 “군인 또는 군무원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4항 중 “군인”을 “군인 또는 군무원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“군인”을 “군인 또는 군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
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	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 -
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<u>군인</u>	----- <u>군인</u>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	<u>또는 군무원</u> -----
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	-----
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	-----
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자의 기	-----.
준은 무주택기간, 복무기간, 부	-----
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	-----
령령으로 정한다.	-----.
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	② -----
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	-----
자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	-----
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	-----
<u>군인</u>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	<u>군인 또는 군무원</u> -----
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	-----
이 무주택 <u>군인</u> 을 대상으로 주	----- <u>군인 또는</u>
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	<u>군무원</u> -----
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	-----
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	-----.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	-----
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	-----

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국방·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(이하 “사업주체”라 한다)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(생략)

③ -----

----군인 또는 군무원----

-----군인 또는 군무원

④ _____

_____ 군인 또는

군무원 _____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)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<u>군인</u>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「주택법」 제5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주택법」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국방부장관”으로, “제54조”는 “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0조제4항”으로 본다. ② ~ ⑤ (생략)	제10조의2(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군인 또는 군무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